

# 예 산 총 칙

제 1 조 (총칙) 2019년도 영주시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의 추정손익계산서,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 현금흐름표는 다음과 같다.

가. 추정손익계산서

차 변		대 변	
비 용	순이익	수 익	순손실
9,447,022천원	767,031천원	10,214,053천원	0천원

나. 추정재무상태표

차 변	대 변	
자 산	부 채	자 본
131,025,247천원	836,802천원	130,188,445천원

다. 추정현금흐름표(자금계획서)

과 목	금 액
I.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	767,031천원
II.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	(25,155,178)천원
III.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	21,448,500천원
IV. 현금의 증감(I + II + III)	(2,939,647)천원
V. 기초의 현금	2,939,647천원
VI. 기말의 현금	0 원

제 2 조 (업무의 예정량) 업무의 예정량은 다음과 같다.

가. 급 수 전 수 : 24,837전 나. 년 간 생 산 량 : 14,556천 m<sup>3</sup>

다. 1일 평균생산량 : 39.7천 m<sup>3</sup>

제 3 조 (수익적수입 및 지출) 수익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수입		지출	
제 1 관 상수도사업수익	10,214,053천원	제 1 관 상수도사업비용	9,447,022천원
제 1 항 영업 수익	9,999,473 "	제 1 항 영업 비용	9,293,999 "
제 2 항 영업 외 수익	214,580 "	제 2 항 영업 외 비용	"
제 3 항 특 별 이 익	0 "	제 3 항 예 비 비	153,023 "

제 4 조 (자본적수입 및 지출) 자본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 자본적수입액이 자본적지출액에 대하여 부족한 금액 767,031천원은 상수도 사업수익액 767,031천원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한다.

수입		지출	
제 1 관 자본적수입	24,585,947천원	제 1 관 자본적지출	25,352,978천원
제 1 항 고정자산매각수입	0 "	제 1 항 유형 자산 취득	19,775,178 "
제 2 항 비유동부채수입	0 "	제 2 항 비가동설비자산취득	5,380,000 "
제 3 항 자본잉여금수입	21,646,300 "	제 3 항 기타자본적지출	0 "
제 4 항 유 보 자 금	2,939,647 "	제 4 항 예 비 비	197,800 "

제 5 조 (계속비) 계속비의 총액과 연할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관	항	사 업 명	총 액	년 도	연 할 액
		해 당	없 음		

제 6 조(채무부담행위)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과 기간 및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사	항	기	간	한	도	액
		해	당	없	음	

제 7 조 (지방채) 공기업채 발행을 위한 기채의 목적, 한도액, 기채의 방법, 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기 채 목 적	한 도 액	기 채 방 법	이 자 율	상 환 방 법
	해 당	없 음		

제 8 조 (일시차입금)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1,044,000천원으로 정한다.

제 9 조 (예산전용 금지과목) 다음에 계기하는 과목의 경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그 경비를 전용할 수 없다.

(1) 인 건 비 : 2,382,930천원 (2) 업무추진비(타 비목으로부터의 전용금지) : 10,500천원

제 10 조 (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) 상수도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 및 타 회계로부터 이 공기업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은 21,428,000천원이다.

제 11 조 (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) 이익잉여금 없음

제 12 조 (중요자산취득 및 처분)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 분	종 류	명 칭	수 량	금 액
		해 당 없 음		

제 13 조 (회전기금) 회전기금의 한도액 해당없음

2019. 9. .

영 주 시 장